

#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2월 10일 한선재, 강동구의원 등 12인  
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12월 12일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내 집안 주차장 갖기」 사업은 단독·공동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 안에서 일부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며, 조성된 주차장은 5년 동안 타 용도로의 변경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.
-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한기간 도래 전에 타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인수자가 타 용도로 사용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,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소유권 양도 후에도 주차장 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조금

환수대상을 인적 범위에서 공간적 범위로 하여 보조금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.(안 제26조)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부천시 주차장 조례중 안 제26조 소유자 및 양도양수 처분 후 분쟁소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?	○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 할 경우를 대비해서 더욱더 강화하는 내용임.

### 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#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번	안 호	관련 제200호
의 년 월 일	결 년 월 일	2007. 12. 21 (제140회)

제안년월일 : 2007. 12. 10.

제 안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 및 현재소유자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함.

## 2. 주요골자

-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시설의 분쟁소지를 없애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보조금을 즉시 반납하도록 규정함.

#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제26조중 “ 보조금을 지급받은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이  
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  
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  
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  
자 및 현재 소유자는 주차장 설치일 완료일부터 5년 이내 주차장 용  
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  
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 
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 
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6조(보조금 반환)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6조(보조금 반환) -----지 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는-----5년 이내----- -----즉시 보조금을 -----사정에 따 라 -----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6조(보조금반환)보조금을 지 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[수정안 포함]

##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“지급받은자가”를 “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는”으로 하고, “5년이내”를 “5년 이내”로 하며, “즉시”를 “즉시 보조금을”으로 하고, “사정에 의하여”를 “사정에 따라”로 하며, “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